안양시 인덕원역 기름유출 복원 추진자문단 구성 및 운영규정

제정 2005. 2. 11 훈령 제458호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종단송유관(TKP)의 인덕원역 주변의 누유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「안양시 인덕원역 기름 유출 복원 추진자문단」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능) ① 안양시 인덕원역 기름유출 복원 추진자문단(이하 "자문단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
 - 1. 토양 및 지하수 복원방안
 - 2. 복원진행에 따른 적정성, 효율성, 안전성
 - 3. 복원시설의 유해성 및 안전관리
 - 4. 기타 복원과 관련한 사항
 - ② 자문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에 필요한 각종자료를 수집·분석하여 자문회의에 응하여야 한다.
 - ③ 자문단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과제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자문단은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 - 1. 토양관련분야, 지하수관련분야 및 휘발성유기화합물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
 - 2. 토양 및 지하수정화 관련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
 - 3. 기타 환경에 관한 전문가
 - ② 위원의 임기는 인덕원역 기름유출 복원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.
 - ③ 시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,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
- 제4조(자문회의) ① 시장은 인덕원역 기름유출 복원 추진에 따라 자문이 필요

안양시 인덕원역 기름유출 복원 추진자문단 구성 및 운영규정

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.

- ② 시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복원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.
- 제5조(회의록) ① 자문단은 회의록 및 자문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 -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, 장소, 출석위원, 회의안건, 자문내용 및 결과를 기록 •관리 하여야 한다.
- 제6조(간사와 서기) 자문단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환경지도팀장을 서기로 한다.
- 제7조(실비변상) 자문회의에 참석하거나 복원현장 확인을 위하여 출장하는 자 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의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유효기간) 이 규정은 인덕원역 기름유출에 따른 토양 및 지하수 복원사업의 완료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